

2022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연 수 구
감 사 실

2022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22년 자체감사 및 감찰 종합계획 [감사실-10823(2021. 12. 30.)]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5명
- 감사대상 및 범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 대상 범위
옥련2동	2022.10.11. ~ 10.14.(4일)	2019. 4월 ~ 2022. 8월 추진업무 전반
연수1동	2022.10.17. ~ 10.20.(4일)	
청학동	2022.10.24. ~ 10.27.(4일)	
송도2동	2022.10.31. ~ 11. 3.(4일)	

3. 중점감사 사항

- 예산·회계(공사 및 계약 포함)
- 주민등록 및 인감
- 주민자치센터
- 사회복지 등

II

지적사항

제목	1. 공사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감독일지(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아 공사 감독 및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2.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공사 하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3. 공사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준공검사 등 공사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계약업체에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건설안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5.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상품권)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세입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부적정하게 관리된 인센티브(상품권)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6. 예산집행 품의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일반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전 집행품의 없이 사업이 완료된 후 또는 신용카드 사용 후 지출을 품의하는 등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급량비 등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한 지출 시 카드 사용자의 실명(직급,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작성·보고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8.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집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부적정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9. 주민자치센터 회계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차량을 임차하면서 사업자의 정당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된 차량의 정기 검사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등을 미확인
처분 요구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10.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경감기준을 착오 적용하는 등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고, 「주민등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경감부과, 감경징수 결정 및 고지 서 발행을 위한 부과·등록 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지연하여 처리함.
처분 요구 사항	「주민등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12.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부과되지 않은 과태료를 추징하고, 「주민등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3.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기준 및 경과기간, 일제정리기간 착오적용 하는등 재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착오 부과된 과태료를 추징하고, 「주민등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4.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의 주무(담당) 소인 누락 및 주요 기재사항 누락, 성별 구분 작성 미이행 등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작성·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기록을 보완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5. 통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통장의 공개모집시기 및 공고기간을 미준수하거나 전자공보를 미활용하고 공고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함.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16. 통장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경과 후 해촉을 통지 및 위·해촉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는 통장의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 착오로 수당을 잘못 지급
처분 요구 사항	착오 지급한 통장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회수 및 추급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7.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수감 기간 중,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지연 공고하거나, 공개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누락된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8. 주민자치회 수강료 사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하여 수강료를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물품대장에 미등재
처분 요구 사항	운영경비 사용범위를 벗어나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9. 자율방범대 실비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자율방범대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원계획 및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상금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실비지원 예산 편성 시, 지원계획과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0.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장애인 재판정 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재진단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통지를 하여야하나 이를 지체하였으며,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하여야 하나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미 실시 하거나 지체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2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에 있어 지출내역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시정 조치 또는 추가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22.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청소년증 (재)발급 대리 신청·접수 시 대리인에게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청소년증 교부 시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청소년증의 실제 수령인 및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게 업무를 처리
처분 요구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청소년사업 안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23.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장애인등록증 신청내역, 수령자 및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시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 교부
처분 요구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24.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대여 및 리스 장애인차량이 경우 차량 임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

제목	25. 직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의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사용 건에 대하여 누락된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26.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면제함에 있어 신청서를 받지 않고 면제사유만을 확인하고 교육훈련 면제를 승인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방위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요구” 조치